





## 신변보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하 정 훈\*

### 〈요 약〉

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변보호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변보호업무를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경비원 신입교육 제도는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주제어 :** 신변보호업무, 신변보호업무경비원, 민간경비, 경비업법, 현장전문가

\* 중원대학교 경호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서 론</li> <li>II. 이론적 배경</li> <li>III. 연구방법</li> <li>IV. 결과 및 분석</li> <li>V. 논 의</li> </ul> |
|--|

## I. 서 론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국민들의 안전욕구 증대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등의 국제적인 중요행사가 개최되고 국내의 민간경비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업무를 잘 수행해 내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간경비산업의 법적인 잣대가 되는 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되고 수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제도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민간경비산업과 경비업법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온지 4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경비업무와 관련되어진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은 자주 발생되어지고 있다. 2012년 국내에서는 몇몇 민간경비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 동안 민간경비업관련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 할 정도로 큰 이슈화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3년 5월 7일 경비업법의 전체 31개 조항 가운데 17개의 조항을 개정하는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경비업법 법률 제11872호)

하지만 민간경비산업이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여러 연구물들이 시설경비업무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경비원 전체를 대변하는 연구물이 많고, 신변보호업무관련 연구물인 경우도 경비지도사나 교육훈련 위주의 연구 업적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비업법에 규정되어있는 업무의 영역보다 더욱 세분화와 전문화되어지는데 민간경비산업과 연관되어진 법령이나 교육 등이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변보호업무 일선현장에서 다년간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면접을 바탕으로 한국 신변보호업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신변보호산업의 질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신변보호업무의 개념 및 현황

한국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의하여 개념이 정의 내려지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신변보호업무는 1995년 12월 30일 개정에 의하여 경비업법에 추가되어져서 현재까지 경비업무의 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경비업법 법률 제5124호).

학문적 관점에서는 학자들만의 개념 정의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김태민(2005)은 ‘경호’와 ‘경비’의 용어사용에 관해 보편적 인식의 개념에서 접근하자면 관련업계에서는 신변보호활동 및 호위적 성격이 주(主)가 되는 업무수행활동을 ‘경호’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고, 경호대상자의 생명 또는 재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활동을 ‘경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표 1〉 한국 경비업 현황 (2014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업체 수	업종 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2014년	4,287	5,040	4,184	40	538	139	139

자료: 경찰청(<http://www.police.go.kr>)

위 <표 1>에 보듯이 한국은 4287개의 경비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신변보호 업무를 허가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수도 전체 경비업무 중에 시설경비업무 다음으로 많은 538개의 경비업체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민간경비 활동 분야를 보면 약 80%는 아직 인력위주의 건물이나 아파트 경비 등의 시설경비이고, 그 이외 신변보호 12.5%, 기계경비 3.5%, 특수경비 2.1%, 호송경비 1.2%이다(석청호, 2010).

## 2. 신변보호업무의 특성

경비업무는 본연의 기능적인부분에서 다른 일반적인 업무들에 비하여 인적/물리적 대상을 보호한다는 목적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은 올바른 윤리관과 업무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정기교육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신변보호업무는 다른 경비업무와 같이 특정 시설물이나 경비 대상시설 등의 물리적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대상인 경호대상자의 신체 및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타 경비업무와 경중을 논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경비업무 보다도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신변보호요원 즉 경호원은 크게 사전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선발경호원과 근접경호활동을 담당하는 근접경호원으로 구분된다. 선발경호원이 행사장에 사전 파견되어 정·첩보활동, 보안활동, 검측활동 및 안전 확보를 실시하는 반면에 근접경호원은 경호대상자가 이동 중이거나 행사장에 참석 중, 근접에서 수행하면서 경호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각종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호위활동을 실시한다. 경호대상자를 24시간 수행한다고 하여 수행경호원이라고도 한다(미국 비밀경호대, 1990: 28).

본 연구에서 현장전문가들에게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 시 범위와 내용은 개인적 특성인 경우 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2012)의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에 사용한 내용을 교육적 측면은 경비업법 제13조 ①항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법·제도적 측면은 김태환, 박옥철(2005)을 참고하여 전문가 회의 시 재구성하였다.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측면은 백승민(2014)의 연구를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 3. 선행연구의 검토

신변보호업무에 있어서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의 문제점들과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세부적으로 신변보호업무만을 규정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민간경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발전방안을 논의한 연구는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으며, 신변보호업무관련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변보호업무에 한정되어진 연구 중 최근의 연구로 김계원과 서진석(2014)은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 및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 및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공인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공인된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강화하여야하며 경비업자의 의무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협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훈재(2013)는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자의 지위와 역할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질적 향상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장규와 김남중(2013)은 한국 신변보호업과 관련된 연구물과 관련통계자료 및 보도내용들을 분석하여 한국 신변보호업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비업체의 설립 허가요건 강화해야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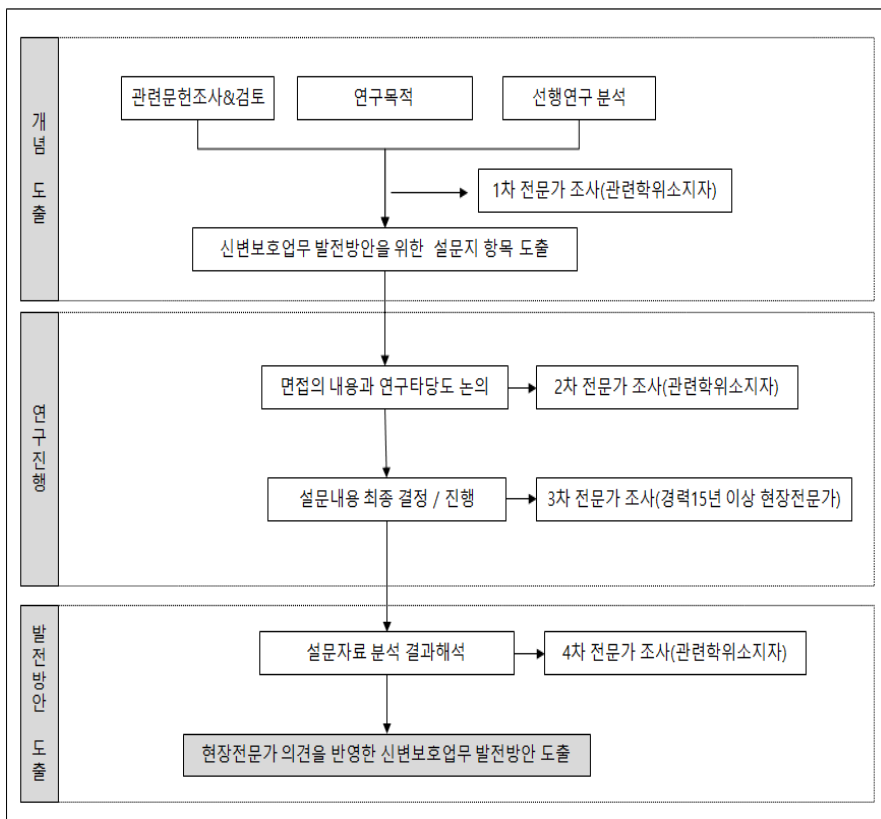
본 연구는 누구보다 현재 한국의 신변보호업무의 실상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현장에서 다년간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 신변보호업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변보호업무 분야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틀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2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각 집단의 특성과 연구목적에 맞도록 4차례의 전문가회의를 집행하였다.



[그림 1] 연구의 틀



첫 번째 전문가집단은 연구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호안전학 박사 3명, 체육학 박사 1명, 관광학 박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2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설문문항을 가지고 두 번째 전문가집단인 현장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3차 전문가조사에 활용된 설문은 자유응답형, 서술형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즉 1차 전문가회의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범위와 연구방법, 면접의 범위를 논의하였고, 2차 전문가회의에서는 면접의 내용과 연구의 타당도를 논의하였고, 3차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 전문가회의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자료 분석과 결과해석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표 2>의 관련학위 소지자 5인의 전문가 집단과 경력 15년 이상의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진 신변보호업무 경비원 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3>는 선정된 전문가집단의 인적사항이다.

또한 현장 전문가집단의 근무경력은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15년 이상 신변보호업무에 종사하여야만 현장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업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자립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표 2> 전문가집단 1(관련분야 학위소지자)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전공 분야
PHY	남	33	경호안전학박사	정치인 신변보호
OBI	남	50	경호안전학박사	국회경비대
KTY	남	58	경호안전학박사	국회경비대퇴직
KKB	남	34	관광학박사	관광학과 교수
KCH	남	63	체육학박사	경호학과 교수

〈표 3〉 전문가집단 2(경력 15년 이상의 관련분야 현장전문가)

이름	성별	연령	학력	경력	결혼	전문분야
KKH	남	46	고졸	17년	기혼	법원 동행 신변보호
SJK	남	51	전문대졸	21년	기혼	영화 시사회 및 영화배우 신변보호
LHM	남	41	대졸	16년	미혼	병원 의료진 신변보호
CSH	여	39	대졸	16년	미혼	외국 스포츠스타, 연예인
KJW	남	44	전문대졸	20년	기혼	공연, 행사 경호 기획
PYC	남	42	고졸	17년	기혼	콘서트, 스포츠 경기
LES	여	37	고졸	15년	미혼	기업 및 주민 총회 신변보호

###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의 조사기간은 2015년 4월 7일 - 2015년 6월 27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참여관찰은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이루어졌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비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후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신변보호업무의 교육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측면별로 구성된 문항을 토대로 면접의 범위 및 내용을 도출하였다. 심층면담은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에서 자료수집이 불충분한부분은 E-mail 및 전화를 이용하여 추가로 보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설계는 <표 4>와 같다.

또한, 선행연구, 관련문헌연구 그리고 1-2차 전문가조사를 통해 완성되어 현장 전문가집단 면담에 사용한 면접 범위 및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4〉 표본설계

표본	유의표집법을 통해 선정된 각각 5인과 7명의 관련 전문가
조사기간	1차 면담(관련분야 학위소지자) 2015년 4월 7일 - 2015년 4월 30일
	2차 면담(관련분야 학위소지자) 2015년 5월 11일 - 2015년 5월 23일
	3차 면담(경력15년 이상 현장전문가) 2015년 6월 2일 - 2015년 6월 11일
	4차 면담(관련분야 학위소지자) 2015년 6월 22일 - 2015년 6월 27일
표본크기 5(7), 회수표본 5(7), 유효표본 5(7)	

〈표 5〉 면접의 범위 및 내용

하위요인	면접 내용	연구근거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결혼유무, 전문분야	양미진 외 (2012)
교육적 측면	1. 신변보호업무 경비원의 신입교육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신변보호업무 경비원의 직무교육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신변보호업무 경비원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경비업법 제13조 ①항 참고하여 재구성
법·제도적 측면	1.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경비업법은 알맞게 제·개정 되어졌는가? 2.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경비업법이 개정 되어져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김태환·박옥철 (2005)
관계기관 상호협력측면	1. 관리·감독기관인 경찰은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가? 2. 한국경비협회는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가?	백승민 (2014)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각각의 요인별로 요약하여 이 론을 도출하는 질적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심층면접자료를 받 고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사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하위요인별로 내용을 재정리하고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 IV. 결과 및 분석

#### 1. 신변보호업무의 교육적인 측면의 발전방안

##### 1) 경비원 신입교육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산업의 발전과 수요자들의 욕구에 따라 업무의 다양성 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 족한 신입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기·김학경(2012)은 영국의 경우 신변 경호 스페셜리스트 모듈(Close Protection)의 경우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138시간

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신변보호업무 경비원에 관한 전문적인 신입교육은 따로 없이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24시간으로 신입교육 이수는 끝이 납니다. 이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는다고 과연 신변보호 현장에 나와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차라리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경비원은 이수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경호학에 관한 이론과 신변보호 실무에 관한 실습을 익히게 하고 신변보호 이수증을 줘서 현장에 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즉, 지금의 일반경비원교육과 특수경비원교육의 두 가지에 신변보호경비원교육을 추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간을 법제화 하고 신변보호는 신변보호이수증이 있는 경비원만 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kkh).

현행 경비원 신입교육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나 경비원 신입교육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을 일반경비원으로 동일시하여 신입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세분화, 전문화 되어진 업무의 특성상 산업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흡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신변보호는 의뢰인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lhm).

매우 형식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내가 경비원으로 근무를 시작 할 때는 경비업체에서 신입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였지만 요즘은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교육기관에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신입교육을 수료한 경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운전면허시험보다 훨씬 쉽고 교육시간에 대충 잠자다가 시험을 봐도 테스트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경비원의 대다수가 시설경비업무를 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수여서 이 분들 위주로 신입경비원이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의 신입교육과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경비협회와 친분이 있는 강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무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교육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설경비업무경비원과 신변보호업무경비원의 신입교육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28시간이 아닌 40시간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신임 신변보호업무경비원으로써 꼭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csh).

의무적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교육에 참여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신변보호업무와는 큰 연관성이 없고, 교육장 분위기 및 강사의 실무적이고 양질의 교육이 아닌 교재에 나와 있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강의도 한 목 한다고 생각되어진다(kjw).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시간 중에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les).

현행 법규상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 특수경비원신임교육으로만 나뉘어져 있어서 특수경비업무경비원을 제외한 다른 4가지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은 업무의 성질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비원신임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의 열의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비원신임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변보호업무와 연관되어진 교육과목으로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 2) 경비원 직무교육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나, 현실적으로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효율적인 직무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집단민원현장일 경우는 배치 전 지도사로부터 전수교육을 잠시 받지만, 평소 직무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개선 방안으로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 한해 등록제를 신설하여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따로 발급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전문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을 하여 꾸준히 신변보호 경비원들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유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sjk).

에스원, 캡스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경비업체는 교육기관이 잘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경비업체는 영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 하다 보니 형식에 그치는 교육이 많습니다. 경찰기관 같은 국가기관에서 주관하여 교육기관을 설립등도 고려해 보면 어떠나 싶습니다(lhm).

매우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의견을 물

어 볼 때마다 거의 모든 경비원들의 대답은 실질적으로 직무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경비업법 상 직무교육이 의무화 되어있어서 서류상으로는 교육을 실시 한 것처럼 만들어 놓지만 이는 서류상으로만 교육을 시행 한 것처럼 꾸며 놓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은 업무가 발생했을 때는 업무에 투입되어지고 업무가 없을 시에는 프리랜서들처럼 자택에서 휴식 및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csh).

신변보호업무 경비원의 직무교육은 월 4시간 이상 경비업자가 실시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많다보니 형식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하고서는 업무에 투입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les).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변보호업무 경비업체는 영세하여, 한 명의 직원이 여러 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현장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하고 사무실에서는 행사 기획을 하여야하고 협력사와는 업무진행에 관하여 회의를 하여야하고, 그렇다보니 실질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경비업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시한 것처럼 다들 형식적으로 관련서류들을 비치한다.

경비 업체의 정규직원과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직원들의 직무교육 이원화가 필요하다. 정규직은 행사 및 현장 파견 시 투입인원 편성과 예산 산출, 근무 형태, 관공서 협조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하고,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직원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 응대, 예절 및 투입되는 업무의 합법성판단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pyc).

신변보호 업무의 특성상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직무교육을 위하여 매 월 4시간 이상을 교육장에 모여서 교육을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신변보호 업무경비원에게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매우 부족하다. 또한 현재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변화를 준다면,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관리/감독기관인 경찰에 보여주기 위한 서류상의 교육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이에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입 교육처럼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 3) 필요시 되는 교육

경호업무수행방법론, 경호의전, 구급법, 경호조직론, 사주경계 및 근접경호, 차량 경호, 행사장경호 등의 이론과 실무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kkh).

기본 경호대형, 위기대처능력, 제압술, 통신장비 훈련, 차량 승하차 훈련과 선발, 수행, 숙소별 경호 훈련, 응급처치, 보안 검측(시설물) 훈련 등(lhm).

실무에서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면 경호대상자와 보행 시 경호원의 위치선정방법이나 통신장비사용법, 의뢰인과 대화예절, 주요건물별 경호 기법 등...

그리고 내가 주로 하는 업무가 외국유명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들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외국인에 대한 기본 에티켓을 잘 모른다.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이런 교육들도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csh).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도 요즘은 전문 분야가 많이 특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비업법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지만,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 연예인 관련 시사회나 팬 사인회 또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 신변보호업무 등등... 실무적으로는 많이 세분화되고, 특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입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가 알기로는 국내에 경호학과가 개설 된지가 20여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출된 전문 인력들 중에서 현장 경험까지 겸비한 전문 인력들이 국내에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편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kjw).

행사 투입 인원과 개인 신변 보호 투입 인원의 교육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사 투입 인원은 행사의 정확한 개요 숙지, 태도 및 친절 서비스 교육과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관공서 협조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신변 보호업무 투입 인원은 상황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황 발생 시 관공서 대처 요령, 의뢰인의 심리적인 부분과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ptyc).

차량탑승훈련, 대형훈련, 통신장비실습훈련(les).

김경태(2012)는 민간경비원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민간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정립하여 경비업무를 원만히 처리

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민간경비원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 2. 신변보호업무의 법·제도적인 측면의 발전방안

### 1) 현행 법·제도적 문제점

집단민원현장이란 법규를 통해 유치권, 이권개입, 노조현장 등의 용역현장과 각종 행사장의 진행 및 경호, 신변보호 등을 같이 묶는 건 대단히 잘못된 법 규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유치권, 이권개입, 노조현장을 집단민원현장으로 하나로 묶어 법규를 만들고 적용시키며, 신변보호 및 행사장 관련 현장은 새로운 법규를 따로 제정하여 적용 받을 수 있게 해서 각급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보다 더 원활한 현장 진행이 되고 경비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sjk).

언론에 노조현장의 경비업 임무수행이 범법행위로 비추어져 많은 제약이 생겨 사실상 경비업자의 부담이 가중 되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이야 당연히 철저한 법규 아래 임무수행을 하여야 하지만 문화관련 현장은 현재 경비업법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 합니다. 확실한 현장 구분과 법 개정이 절실 하다고 생각 합니다(lhm).

‘집단민원현장’이란 규정에 연예인 팬 사인회 및 쇼 케이스 등 이 포함되어져서 일반적인 신변보호업무를 노동 쟁의나 재건축/재개발 관련업무 등과 동일 시 취급 받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les).

신변보호업무는 경비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2013년 개정되어진 주요내용들 중에는 일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규제가 강화되어졌다고 현장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상훈((2013)은 예년에 비해 국가적 규제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은 비단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사회적으로 불관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경비업무에 대한 부분까지 경찰개입과 규제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경비업법 제2조 ⑤항 바목에서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을 집단민원현장에 포함시켜 노동 쟁의나 재건축/재개발 관련업무 등과 동일 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처럼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법·제도적인 측면의 발전방안

신변보호업무 경비원 교육 및 이수증의 별도 발급, 일 년에 한 번씩의 집체교육, 업무 시 소극적 방어라는 미명하에 물리력행위를 전혀 못하게 하는 규제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경비원이 물리력을 맘대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업무상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혀 못하게 경찰들이 규제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없는 게 실정입니다(kkh).

경비업법 내용 안에 신변보호업무 경비원의 등급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현장의 경비원들은 20세의 초보자 이거나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 이거나 의뢰인과의 계약에서는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지고 있다. 이는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저해하고, 자기개발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번지어 곧 신변보호업무의 질적 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csh).

공공기관에서 신변보호 업무 경비원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관리 하고 동종 직원들의 처우 및 누구나가 아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야 우수한 인원들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 형성 된다고 본다(pyc).

현재는 신변보호/시설경비업무 경비원의 배치를 구분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민간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의뢰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변보호업무 수행 시 수행경호에서 특정지역 상주 시 경비업무로 임무 전환 등, 2배의 인원이 필요 하므로 개정이 필요 합니다(lhm).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비원이 시설경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 신설필요(les).

김학경(2014)은 민간경비원에게 제한된 경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상당한 국민적 우려 내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제조건으로 전문화·표준화된 자질 검증 및 교육훈련 제도 등을 통하여 민간경비산업을 전문적으로 규제하고, 이로써 양적성장에 한계가 있는 공권력(공경비)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먼저 배양해야 할 것이다.

### 3. 신변보호업무의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적인 측면의 발전방안

#### 1) 경찰과의 상호협력관계

일단 신변보호의 배치신고 규정이 일반현장은 배치직전이지만 집단민원현장은 48시간 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잘못된 규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의뢰인을 경호하면서 의뢰인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일반적인 현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정에도 없는 집단민원현장이라고 규정된 곳에도 갈 수도 있는 게 현실인데 사전에 경비원이 이를 인지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집단민원현장에 투입되는 신변보호경비원의 48시간 전 배치허가 규정을 대입해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몰고 간다면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계의 현장에서의 지도감독은 각 경찰서 담당자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업무에 차질을 많이 겪고 있으니 경찰청의 통일된 내부 기준을 확립하고 담당자 교육을 정확히 시켜서 실무자들에게 더 이상의 혼선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sjk).

현행 경비업법에서의 배치신고규정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들과 이들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시설경비업무경비원들은 경비원 수급 및 탄력적 운용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치 후 7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배치 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단민원현장이라고 규정되어있는 장소에 투입 시는 48시간 전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신변보호업무의 특성상, 다급하게 서비스가 필요시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경비업법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너무 규제 위주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단민원현장이라고 경비업법에 규정되어있는 업무에 투입되어지는 경우는 관할경찰서 경비업 담당자가 신변보호업무경비업체의 대표이사한테 경비업 담당자를 찾아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정식적인 규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업무를 하는 업체한테 죄인 취급하듯이 각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혹시나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봐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다가 한번은 경비업 담당자에게 여쭙어봤습니다. 왜 각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돌아오는 대답은 경찰청 감

독명령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다는 겁니다. 슬픈 현실입니다(kkh).

각 관할 경찰서에 경비업을 담당하는 생활안전계 직원은 대부분 1명이며 업무 과중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 접수에서 현장 지도 감독 등이며, 담당자가 경비업 업무에 경험이 없으면 배치신고서 제출 시 경비업 조항을 읽으며 감독을 하게 되므로 경비업자는 매우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변보호업무 요청 시 다수의 의뢰인은 비노출로 임무수행을 요청하는데 현 경비업법에 의하면 임무수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찰 기관도 감독 시에 “갑” “을” 관계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 하여 보다 안전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선도 하는 기관으로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lhm).

아주 엉망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광장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런 경우 관련 담당자는 경비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입되는지 서류 상의 시간만을 체크하고서는 업무하는 시간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서는 한 참 업무 중에 있는 경비원들을 소집시킵니다. 한명씩 투입명단과 실제 투입인원을 대조 해서 확인한다는 취지로. 그러면 실제로 경비원들은 행사장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간인데 업무는 뒤로하고 경찰의 확인을 받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말로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갑중의 갑이 경찰서 경비업 담당자입니다(kjw).

관리 감독이란 전제하에 현재 신변 보호 업체와 생활 안전과는 상·하 관계로 규정되어 있는 듯하다.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로의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 및 공권력의 도움을 신속하게 청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pyc). 신변보호업무 경비원 배치관련 신고서를 각 관할경찰서 생활 안전계로 팩스 및 e-메일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les).

어느 국가든 공권력인 경찰은 인력이나 예산 등의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공권력으로는 부족한 국민들의 안전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민간경비산업이 발생하고 발전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논함에 있어 공경비의 대표 격인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간에는 상호 협력하여야 경비의 기본적인 목적인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훈(2013)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경비원이 공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찰과 협력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한다는 구조는 지극히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비효율적 국가

안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oulin, K. C. & Nemeth, Charles. P.(2004)는 미국의 마이애미 경찰은 이러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미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으며, SCAN(Security Communications Assistance Network)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비업무 전문가협회의 회원사들이 지역의 경찰기관과 상호교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가지고 통신망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이루고 있다. 마이애미 경찰은 이를 통하여 경찰관 수의 10배에 이르는 민간경비원을 순찰과 범죄예방 및 진압에 있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동균·김태민(2011)은 미국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변보호업무 경비업과 경찰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매우 경직된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체자인 경비업체와 특히 경찰의 인식전환이 필요시 되고, 현행 제도(관할 경찰서 경비업 담당자 1인 체제)로는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으로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 2) 경비협회와의 상호협력관계

한국경비협회 관련자분들은 거의 다 시설경비를 운영하는 업체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설경비분야만 잘 알뿐이지 신변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경험치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신변보호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전혀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 차라리 신변보호협회와 같은 기구를 따로 창설하여 신변보호와 관련된 권익보호와 경비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하나의 개별단체로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kkh).

현 경비협회 임원의 구성원들은 특수경비/시설경비 등 단순경비 위주의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변보호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경비원 신입교육 등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원구성도 5개 경비업 분야 전문경력자 및 경영자들로 구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며, 소수 경비업자들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경비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 신입교육은 각 경호경비 관련 학과 교수 및 동등 자격자가 교육하고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많은 활동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lhm).

한국경비협회는 우리나라 경비업체의 대표가 되는 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시설 경비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경비업체들이 규모 및 업체 수, 경비원의 수 등 전체 경비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경비협회 역시 시설경비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경비업체의 임원진으로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열세인 타 경비업무 분야는 경비협회가 그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변보호업무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경비협회에서 신변보호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한 행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몇 년 전에 신변보호사 자격증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은 동료들을 통해서 접했지만 과연 현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느껴진다(csh).

한국 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les).

우리나라의 한국경비협회는 임원 대부분이 시설경비업무 위주의 민간경비업체들로 구성되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복지 및 권리신장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분과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 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 4.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

경찰 및 국가기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경찰청과 경비협회 등 전문기관 주체로 경호원 선발 대회 등 전문 경비 인력 육성과 현실적인 경비업법 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lhm).

신변보호 업무 종사자의 자격증을 부여하여 급수에 따른 인원배치 규정을 만들어 경험 있고 우수한 인원들의 처우 개선 및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신변보호 협회를 창설하고 기본적인 예산 가이드를 편성하여 건강하고 내실 있는 종사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yc).

이상훈(2013)은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방법이나 주법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일정한 경비원에게는 정치권, 질문권, 그리고 체포권 등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한 민간경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권한을 법제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권한부여의 전제가 되는 자질의 문제는 제반 교육과 전문자격증이나 안전관리강화로 보완하면 된다.

## V. 논 의

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현재의 경비원 신입교육 제도가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 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이상의 결과만으로 우리나라 신변보호업무 발전방안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의 산업은 그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신변보호업무경비업자, 경찰서 경비업담당자, 경비협회 실무자, 신변보호업무서비스이용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태(2012) 민간경비 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경찰학논총*, 7(2), 223-241.
- 김계원·서진석(2012)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 및 능력향상방안 :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9, 42-70.
- 김태민(2005)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태환·박옥철(2005)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9, 69-98.
- 김학경(2014) 제3의 탈경찰화와 민간경비원의 권한확대 :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 미국 비밀경호대(1990) Moments in History. U. S. Secret Service.
- 박동균·김태민(2011)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209-228.
- 박장규·김남중(2013) 한국 신변보호업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3(2), 33-43.
- 백승민(2014) 한국 민간경비 제도적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청호(2010) 협력치안체제구축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4, 67-90.
- 양미진·이동훈·고홍월·김영하·남현주(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이상훈(2013)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349-386.
- 이성기·김학경(2012)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0, 87-115.
- 이훈재(2013)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자의 지위와 역할개선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8(1), 203-224
- Poulin, K. C. & Nemeth, Charles. P.(2004) Private Security and Public Safety : A Community-Based Approach. New Jersey : Prentice-Hall.
- 경비업법 법률 제5124호, 제11872호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Abstract】

## A Study on development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Ha, Ju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protection business plan based on the problem that guards are now awar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after expert survey and interview conducted by seven experts engaged in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more than 15 years. The guard who perform personal protection service proposed a development plan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for new employees' training is requir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program of 40 hours in subjects related to personal protection duties by reorganization

Second, the personal protection service training for guards also appropriate to switch to 8-hour training program for three months through an educational organization controlled by country.

Third, the personal protection guards should be proceeding the practical programs required in the field and quality education in the different section by competent and professional instructors.

Fourth, it should be revised Regulating that on the site of collective civil petition including in Events related to events across the board in the security services law.

Fifth, there needs to be a change of recogni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s, and to be set up the organization for supervision of management by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irms jointly.

Sixth, there needs to be organized a subcommittee which is consisting of experts in each task on Korea Security Association, and founded Korea Personal Protection Association for development associated with the personal protection service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al protection guards.



Key words : personal protection service, personal protection guards,  
private security, The security industry law, expert